

행정자치부

징계·시정 요구

제 목 영월○○○○(주) 중단사업장 실시계획인가 사후관리 업무방치 등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영월군

징계대상자 영월군 ○○○(전 ○○○○○○○○○단) 지방○○○○ ○○○

※ 훈계대상자 ① 영월군 ○○○○○과(전 ○○○○○○○○○단)

지방○○○○○ ○○○

② 영월군 ○○○○○과

지방○○○○○ ○○○

③ 영월군 ○○○○○과

지방○○○○○ ○○○

④ 영월군 ○○○○○과(전 ○○○○○○○과) 지방○○○○○ ○○○

징계종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4. 7. 18.부터 2015. 12. 31까지 영월○○○○(주) 대표 ○○○가 추진 중인 ○○사업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담당으로서, 지방○○○○○ ○○○는 2015. 1. 2.부터 2016. 6. 30까지 동 조성공사 총괄지휘책임자로서, 지방○○○ ○○○는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 조성공사 업무담당으로서, 지방○○○○○ ○○○은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 동 조성공사 실무담당자로서, 2015. 12. 31. 동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가 종료되고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방치되었으며 사업자가 훼손한 산지 미복구, 안전시설 미설

치 및 발생 민원 부적정 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지방○○○○ ○○○는 2015. 7. 6.부터 2016. 6. 30까지 동 조성공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한 실무담당자였다.

영월군에서는 영월○○○○(주) 대표 ○○○(이하“사업자”라 한다)가 ○○읍 ○○리 0000번지 일원에 「관광개발법」에 따라 관광지 지정⁷⁰⁾ 및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⁷¹⁾ 받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⁷²⁾을 받아 2001.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2. 4. 16. 부분준공(1-1공구)을 하였으나 2014. 12. 31.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나 실시 계획 취소 등을 하지 않았으며, 환지방식⁷³⁾으로 추진하던 중 약 4년 6개월 여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1. 실시계획인가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산지관리법」 제16조, 제3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실시계획 기간만료로 실효된 ○○○○관

70) 영월○○ ○○ 관광지 지정 : 1992. 10. 05. (면적 1,258,912m²)

71) 영월○○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 1999. 4. 22.(면적 574,000m²)

72) 영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1997. 10. 24.(건교부). - 최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시행기간 2015. 12. 31.

73) 환지방식: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

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협의 부서인 ○○○○과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했으며, 동 지구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간으로 ○○○○○○과에도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기간이 2015. 12. 31. 만료로 1년이 남아 실시계획 연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시행사에 촉구하겠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일 현재(2016. 10. 7.) 복구비(1,671백만원) 예치기간이 2015. 12. 31. 만료된 상태로 산림훼손 후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관련 업무담당(○○○)은 2014. 7. 17.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자로서 영월○○○○(주)가 추진 중인 ○○사업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연장 또는 해제조치 등을 직접 추진하여야 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라는 사유만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행보증회사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후임 관련 공무원들도 동 현장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계획인가가 해지되어 복구비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으로써 현장을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산지전용 복구대상〉

위 치	행 위 자	산지전용		복구대상		비 고
		면적 (㎡)	복구에치금 (천원)	면적 (㎡)	소요복구비 (천원)	
영월군 ○○읍 ○○리 산○○○-0번지 외 11필지	영월○○○○(주) 대표 ○○	119,300	1,365,489 (2015.12.31. 기간만료)	119,300	1,671,271 (16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평탄지) 비탈면 복구불요

2.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로 사업추진 불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르면 개발촉진 지구의 지정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 관광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상기 개발촉진지구는 자동해제 된 것이다.

상기 사업지구의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개인별 토지가 환지⁷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정이 초래 되자 토지주로 구성된 영월○○○○관광지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가 2016. 8. 2. 대리시행명령권을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과)에서는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2014. 12. 31.)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취소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영월군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2016. 8. 10. 부적정하게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전에 지구지정 자동 해제로 인한 사업시행 중단과 관련하여 개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취소 공문시행 등 이에 대한 행정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여러 차례 면담 등을 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불가 하였다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함으로써, 사업지구가 자동 해제가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조치한 사실이 있다.

74) 환지 :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 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함.

동 건과 관련하여 영월군(○○○○○○과)에서는 관광지조성계획이 2015. 12. 31. 만료되자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연장 건에 대하여 2015. 12. 28. 단순한 기간연장이라며 ○○○○과 협의 없이 강원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17. 12. 31. 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그 결과 사업자는 장기간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중지 상태임에도 영월군수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자가 요청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승인건과 관련하여 ○○○○과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다.

아울러 2016. 9. 30. 실지감사를 하면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상태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동 현장을 직접 확인 한 바, 현장내로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미조치, 공사 중단에 대한 안내판 미설치, 산마루 측구 등 사면보호 미조치, 부지 내 대사면 안전시설 미조치, 부지 경계에 대한 측량표시점 미복구, 대절토구간 사면 경계면 출입자 안전을 위한 위험표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함에도, ○○○○과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안전 시설 설치 측구 등 없이 장기간 중단 사업장을 방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 ○○○, ○○○, ○○○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사업자가 동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촉구하시고, 실시계획인가 부서에서는 투자자 인수 협조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장기간 중단된 현장으로 무단출입 자에 대한 제한 조치, 대사면 안전 조치, 측량표 복구, 대절토 사면 안전을 위한 위험표시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실시계획인가하여 시행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협의 철저 등 업무에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